

# 산업단지입주 [ ]계약 [ ]계약변경 신청(확인)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5일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)

신청인	회사명	(전화번호: )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	

입주 계약 신청 내용	공장(사업장) 소재지			
	입주형태	[ ] 분양	[ ] 임차	[ ] 양도·양수 [ ] 기타
	회사명	대표자 성명		
	업 종	분류번호	첨단업종(적용범위)	생산품(서비스)
	규 모	부지 면적(m <sup>2</sup> )	건축 면적(m <sup>2</sup> )	제조시설 면적(m <sup>2</sup> ) 부대시설 면적(m <sup>2</sup> )

기존 공장	회사명	대표자		
	소재지			
	업 종	분류번호		
	규 모	부지 면적(m <sup>2</sup> )	제조시설 면적(m <sup>2</sup> )	부대시설 면적(m <sup>2</sup> )

계약 변경사항, 사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·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관리기관 귀하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·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관리기관 직인

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및 송달 동의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래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 등의 통지 및 송달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
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(변경계약) 체결
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기 위한 임대신고
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1항·제2항,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신청
5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신고
6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.

전자우편 주소(이메일)	@
휴대전화번호	

년 월 일

동의인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(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) 1부 2.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